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나349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나3493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12818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 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24. 5. 24.

판결선고 2024. 8. 9.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128184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21. 4.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831,9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831,95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1. 6. 10.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44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8.3%, 지연이자율 연 3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6. 5. 4. E 유한회사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6. 5. 23.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E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7. 8.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별지 채권계산서와 같다.

라. 한편 B의 모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5.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G, 피고, B, H, I, J, K가 있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4. 28.경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대여금 채무로 원고에게 16,552,883원 및 그 중 4,045,222원에 대하여 2022.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자력인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각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행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이었던 점, ② B는 제1심에서 ‘최근까지도 떠돌이 생활을 하였고, 부모님 생전에 병원비도 한 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항상 형제들에게 미안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B와 남매 관계에 있는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B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른 형제인 G의 남편 M을 채무자로 하여 2012. 4. 12. L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L조합이 2021. 4.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P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가 2021. 4. 28. L조합에 대한 채무 5,2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총액이 5,2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실제로 L조합이 당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9. 11. 16.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은 112,847,300원이었다¹⁾)), 이 같은 경위 또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1)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2,831,957원[= (공시지가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71,823,700원 - L조합의 근저당채무 변제액 5,200만 원) x 상속지분 1/7]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831,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L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손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및 L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2019. 12. 3. 자 감정평가서상 감정가가 112,847,300원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공시지가로 계산한 71,823,700원 이상이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변제한 L조합의 근저당채무액이 5,200만 원인 사실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이 1/7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분의 가액은 2,831,957원[= (71,823,700원 - 52,000,000원) x 1/7]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831,9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831,9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소연, 판사 김수연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상남도 함양군 대 99㎡
2. 경상남도 함양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함양군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6.36㎡
3. 경상남도 함양군 전 350㎡
4. 경상남도 함양군 답 1,435㎡ 팔.

[별지]

채 권 계 산 서

채권자 : 주식회사

채무자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준일 : (2022.05.15)

계좌번호	대출과목	원금잔액	비용잔액	인수전 이자잔액	인수후 이자잔액	합 계	이자 산출근거
	오토-중고차	4,045,222	0	9,078,521	3,429,140	16,552,883	아래참조
합 계		4,045,222	0	9,078,521	3,429,140	16,552,883	

이 자 산 출 근 거

계좌번호	대출과목	원금	사각일	종료일	여율	일수	인수전 이자금액	인수후 이자금액	비고
	오토-중고차	4,045,222	2019-05-02	2022-05-15	27.90%	1110	9,078,521	3,429,140	
		0	2022-05-15				0	0	원수
합 계							9,078,521	3,429,140	

1) 원고는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71,823,700원(2022년 공시지가의 130%)으로 전제하여 B의 책임재산 가액을 계산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계산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은 위 L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2019. 12. 3.자 감정평가서를 고려하였을 때 112,847,300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당심에서는 이 주장을 하고 있다.